동일하이빌 뉴시티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2007.11.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한 주택으로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입니다.
■ 주택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뉴타운사업과- 3457호(2008.04.23)로 입주자모집승인을 득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88-387번지 외 92필지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 7층~지상33~36층 4개동 아파트 총44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중 일반분양 401세대 (특별공급 13세대 포함)
■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

(단위 : ㎡)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공급세대	세대별 계약면적						대지지분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	주차장	계약면적	
					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 주택	21902~01	2008000435(01)	155.28	194	126.60	28.6870	155.2870	7.6138	64.1762	227.0770	17.0079
	21902~02	2008000435(02)	165.20	101	133.74	31.4636	165.2036	8.0432	67.7954	241.0422	18.0539
	21902~03	2008000435(03)	218.09	50	178.84	39.2549	218.0949	10.7555	90.6578	319.5082	23.9309
	21902~04	2008000435(04)	231.35	26	188.22	43.1395	231.3595	11.3197	95.4127	338.0919	25.3228
	21902~05	2008000435(05)	231.33	26	189.07	42.2667	231.3367	11.3708	95.8434	338.5509	25.3572
	21902~06	2008000435(06)	297.40	4	242.85	54.5513	297.4013	14.6051	123.1056	435.1120	32.5895

(단위 : ㎡, 천원)

주택형 (㎡)	동/라인	층별구분	공급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계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08.09.21	09.02.21	09.08.21	10.01.21	10.06.21	10.10.21	입주시
155.28	101동 3호 102동 2,3호 103동 2호 104동 2,3호	10~15	33	349,435	456,665	806,100	40,305	80,610	80,610	80,610	80,610	80,610	80,610	282,135
		16~20	30	356,720	466,180	822,900	41,145	82,290	82,290	82,290	82,290	82,290	82,290	288,015
		21~25	30	364,005	475,695	839,700	41,985	83,970	83,970	83,970	83,970	83,970	83,970	293,895
		26~30	30	371,290	485,210	856,500	42,825	85,650	85,650	85,650	85,650	85,650	85,650	299,775
		31~35	24	378,575	494,725	873,300	43,665	87,330	87,330	87,330	87,330	87,330	87,330	305,655
	101동 2호 103동 3호	10~15	11	342,465	447,535	790,000	39,500	79,000	79,000	79,000	79,000	79,000	79,000	276,500
		16~20	10	349,570	456,830	806,400	40,320	80,640	80,640	80,640	80,640	80,640	80,640	282,240
		21~25	10	356,720	466,180	822,900	41,145	82,290	82,290	82,290	82,290	82,290	82,290	288,015
		26~30	10	363,836	475,464	839,300	41,965	83,930	83,930	83,930	83,930	83,930	83,930	293,755
		31~34	6	370,986	484,814	855,800	42,790	85,580	85,580	85,580	85,580	85,580	85,580	299,530
165.20	101동 4호 102동 1호 103동 1호 104동 4호	10~15	22	381,041	497,959	879,000	43,950	87,900	87,900	87,900	87,900	87,900	87,900	307,650
		16~20	20	387,977	507,023	895,000	44,750	89,500	89,500	89,500	89,500	89,500	89,500	313,250
		21~25	20	395,915	517,385	913,300	45,665	91,330	91,330	91,330	91,330	91,330	91,330	319,655
		26~30	20	403,797	527,703	931,500	46,575	93,150	93,150	93,150	93,150	93,150	93,150	326,025
		31~36	19	411,600	537,900	949,500	47,475	94,950	94,950	94,950	94,950	94,950	94,950	332,325
218.09	101동 1호	11~15	5	524,231	685,069	1,209,300	60,465	120,930	120,930	120,930	120,930	120,930	120,930	423,255
		16~20	5	530,818	693,682	1,224,500	61,225	122,450	122,450	122,450	122,450	122,450	122,450	428,575
		21~25	5	541,605	707,795	1,249,400	62,470	124,940	124,940	124,940	124,940	124,940	124,940	437,290
		26~30	5	552,448	721,952	1,274,400	63,720	127,440	127,440	127,440	127,440	127,440	127,440	446,040
		31~33	3	563,280	736,120	1,299,400	64,970	129,940	129,940	129,940	129,940	129,940	129,940	454,790
	102동 4호	10~15	6	535,018	699,182	1,234,200	61,710	123,420	123,420	123,420	123,420	123,420	123,420	431,970
		16~20	5	541,605	707,795	1,249,400	62,470	124,940	124,940	124,940	124,940	124,940	124,940	437,290
		21~25	5	552,662	722,238	1,274,900	63,745	127,490	127,490	127,490	127,490	127,490	127,490	446,215
		26~30	5	563,719	736,681	1,300,400	65,020	130,040	130,040	130,040	130,040	130,040	130,040	455,140
		31~36	6	571,950	747,450	1,319,400	65,970	131,940	131,940	131,940	131,940	131,940	131,940	461,790
231.35	103동 4호	10~15	6	570,306	745,294	1,315,600	65,780	131,560	131,560	131,560	131,560	131,560	131,560	460,460
		16~20	5	577,546	754,754	1,332,300	66,615	133,230	133,230	133,230	133,230	133,230	133,230	466,305
		21~25	5	589,335	770,165	1,359,500	67,975	135,950	135,950	135,950	135,950	135,950	135,950	475,825
		26~30	5	601,124	785,576	1,386,700	69,335	138,670	138,670	138,670	138,670	138,670	138,670	485,345
		31~35	5	606,765	792,935	1,399,700	69,985	139,970	139,970	139,970	139,970	139,970	139,970	489,895
231.33	104동 1호	10~15	6	570,261	745,239	1,315,500	65,775	131,550	131,550	131,550	131,550	131,550	131,550	460,425
		16~20	5	577,501	754,699	1,332,200	66,610	133,220	133,220	133,220	133,220	133,220	133,220	466,270
		21~25	5	589,256	770,044	1,359,300	67,965	135,930	135,930	135,930	135,930	135,930	135,930	475,755
		26~30	5	601,045	785,455	1,386,500	69,325	138,650	138,650	138,650	138,650	138,650	138,650	485,275
		31~35	5	606,675	792,825	1,399,500	69,975	139,950	139,950	139,950	139,950	139,950	139,950	489,825
297.40	각동	33, 35, 36	4	1,091,981	1,427,019	2,519,000	125,950	251,900	251,900	251,900	251,900	251,900	251,900	881,650

※ 상기 공급금액은 건축설계상 주택형별/동별 층수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자는 해당 주택형에 따른 층별 분양가를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용(부가세포함)은 아래 표의 해당금액으로, 확장비용은 분양가에서 제외되어 있음.

(단위 : 원, 부가세포함)

주택형(㎡)	위 치	발코니 확장 공사비			비고
		확장전	확장후	실부담액	
155.28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4,213,000	13,074,600	8,861,600	
165.20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침실3	5,253,600	14,878,600	9,625,000	
218.09	거실, 안방(드레스룸포함), 침실1, 침실2, 침실3, 현관, 부부욕실	7,735,200	21,740,400	14,005,200	
231.35	거실, 주방(보조주방포함), 안방, 침실1, 침실2, 침실3, 현관	6,370,100	19,152,100	12,782,000	
231.33	거실, 주방, 안방(드레스룸포함), 침실1, 침실2, 침실3, 현관	8,523,900	21,441,200	12,917,300	
297.40	거실, 주방, 안방, 서재, 침실1, 침실2, 침실3, 부부욕실	9,154,200	27,491,200	18,337,700	

⊙ 발코니 확장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 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비용은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 옵션과 관련된 마감자재 변경 및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호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 에어콘 설치공사

⊙ 에어콘 설치 공사에 따른 공사비용(부가세포함)은 아래 표의 해당금액으로, 에어콘 설치 비용은 분양가에서 제외되어 있음.

(단위 : 원, 부가세포함)

주택형(㎡)	설 치 위 치	설치 개수	설치 금액	비고
155.28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5	7,210,000	
165.20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침실3	6	8,179,000	
218.09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침실3	7	10,035,000	
231.35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침실3	6	9,143,000	
231.33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침실3	6	9,193,000	
297.40	거실, 주방, 안방, 서재, 침실1, 침실2, 침실3	8	13,674,000	

■ 일반 · 특별분양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 실시에 의하여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공사 및 에어콘 설치 공사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임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전체 사업부지에서 기부채납부지 면적을 제외하고,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 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사업주체가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본 아파트는 최초 계약체결 가능일로부터 소유권 이전시까지 전매가 제한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3.3058 또는 형별면적(㎡)×0.3025)
※ 서울특별시 성북구는 주택투기지역(2006. 10. 27부터 시행)으로 지정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적용됨 ※ 당 아파트는 2007. 9. 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되는 민영주택으로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됨

■ 인터넷, KB모바일 청약신청안내

구분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이용대상	공통	⊙ 1,2순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현재 해당순위가 발생한 분 ⊙ 3순위 : 뱅킹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고가 있으신 분(단, 국민은행 통장거래 고객에 한함)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KB모바일	⊙ 국민은행 MBank, KBank, BankOn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WIPI폰 기종만 가능)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이용방법	인터넷	⊙ 국민은행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부동산▶분양관▶사이버청약지점▶인터넷 청약	
	KB모바일	⊙ SKT : Mbank접속▶KB StarNet▶모바일주택청약▶PIN입력▶주택청약신청 ⊙ KTF, LGT : KB뱅킹▶모바일주택청약▶PIN입력▶주택청약신청	

■ 3자녀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04.28)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에게 건설량의 3% 범위내에서 특별분양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도 포함됨(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포함 되지 않음)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함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에는 신청할 수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20세미만)이어야 하며,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입주자 선정방법 : 3자녀 특별공급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3자녀 특별공급세대수

구분	계	155.28㎡	165.20㎡	218.09㎡	231.35㎡	231.33㎡	비고
서울시	7	3	2	1	1	–	
경기도	6	3	1	1	–	1	
합 계	13	6	3	2	1	1	

⊙ 3자녀 특별공급 세대 : 일반공급 401세대 중 3%인 13세대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의 50%를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인구비율에(통계청 통계정보 시스템의 2006년도 내국인 인구통계) 따라 경기도 거주자에게 50%를 각각 공급함

– 특별공급 신청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일반공급:특별공급을 제외한 순위내 청약자에게 공급하는 물량)

⊙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3자녀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으로 신청가능하나, 중복 당첨시 3자녀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함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주택은 우선순위 배점표 상의 차순위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함

⊙ 3자녀 특별공급시 동점자 처리(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청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가 당사 견본주택 방문 신청

⊙ 접수일시 및 장소 : 2008.05.06(화) (10:00~15:30) / 당사 견본주택

⊙ 동/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08.05.06(화) (16:00) / 당사 견본주택

–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일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내

■ 3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 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 점 기 준		비 고
			기준	점수	
계		100			
자녀수 (1)	미성년 자녀	40	4자녀 이상	40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 이상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2)		10	3세대 이상	10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기간(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 · 도 거주기간(4)		20	10년 이상	20	·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시 · 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 · 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1) · (2)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3) 국토해양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당첨 받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구비 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신청시	공통	· 특별공급 신청서 및 배점기준표(당사 견본주택 비치, 무주택 및 당해 시 · 도 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지참 ·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아래의 해당자에 한함)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이혼 · 이혼 · 사별 ·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한 자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 · 초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제3자 대리신청시 추 가 사 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위임장(당사 견본주택 비치)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일반공급(주택의 공급대상)

⊙ 신청자격 및 요건 등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04.28)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이외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변경 하여야 청약 가능함(단, 차액을 감하는 경우 또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 없이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거주지역 해당 청약예금으로 청약 가능함)

⊙ 당 주택부지는 투기과열지구내에 위치하여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며, 1순위자 중 과거 5년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세대주가 아닌 자(2002. 9. 5 이후 가입자에 한함). 1세대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는 1순위 청약이 제한 됨

⊙ 본 주택에 청약관련 예금통장으로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함(1인 2건 이상 신청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당첨된 자 또는 기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제한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1, 2, 3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등이 될 수 있음

⊙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요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제약을 받을 수 있음

■ 일반공급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 분	순 위	주택형	청약 관련 예금	거주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시간	당첨자발표
민영 주택	1순위	전주택형	· 가점제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추첨제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은 적용됨 · 청약자는 가점제 /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 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1순위 자격을 취득한 자 중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008. 05.07 (수)	· 접수장소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 kbstar.com) –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 apt2you.com) –KB모바일 Mbank, Kbank, Bankon · 접수시간 08:30~18:00	· 발표일시 2008.05.16 (금) · 장소 당사 견본 주택, 인터넷 및 서울신문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2순위로 청약 가능)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된 세대에 속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참조) – 2002.9.50후 청약관련예금에 가입한 분 중 세대주가 아닌 분(2002. 9. 5 가입자 포함)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는 예외적으로 2순위 청약 가능함				
	2순위	전주택형	·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 (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접수) · 청약자는 가점제 /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각 주택 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 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6개월이 경과한 분 · 1순위자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		2008. 05.08 (목)		
	3순위	전주택형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2008. 05.09 (금)	· 접수장소 국민은행 인터넷, KB모바일 · 접수시간 08:30~18:00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이 불가함 ※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취약자 등에 대하여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에서만 청약이 가능함(창구 접수시간 : 09:30~16:30)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2007. 9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1,2순위)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일정비율로 배분된 가점제 및 추첨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감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가점제 적용 세부 기준

구분	내 용
일반기준	· 가점제 점수는 아래의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아래의 "감점 산정기준"에 따른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함 · "감점 산정기준"에 따른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가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가점제 점수는 0으로 산정함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 기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비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2 제3항, 제12조 제3항, 제5항, 제7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함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감점점수(아래의 "감점 산정기준" 참고)					

■ 감점 산정기준표

감 점 항 목			감점점수
구분	기 준	소유주주택	
①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제3항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2호 또는 2세대	−5
		3호 또는 3세대	−10
		:	:
②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10
		3호 또는 3세대	−15
		:	:

■ 가점항목별 적용 기준

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60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단, 2007.0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가산함.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나.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함.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봄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부여함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아파트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제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또는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 · 저가주택 1호를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 제1호 가목 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60㎡ 초과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 · 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함(장기간 보유 특례)
–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 만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 현재 소형 · 저가주택을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 특례에 해당 안됨(따라서, 유주택자이며 종전 무주택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현재, 무주택자) 종전에 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 해당 소형 · 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함)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 8. 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경과기간 및 요건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예치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청약부금 가입후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는 가입일(기예치금액 변경한 자는 변경일)로부터 2년마다 예치금액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①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②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③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신청 접수방법

⊙ 공 통 : 충별 · 동별 · 호별 구분 없이 청약 순위별, 주택형별로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 경기도 거주자를 같은 날짜에 거주지역을 구분하여 접수하고,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 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 ·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가점제 청약 접수를 원칙(입주자선정방법[가점제, 추첨제] 선택 불가하며, 가점제로 자동 청약 접수함)으로 하며, 가점제 입주자선정 결과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함(단, 1순위자에 한해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접수시 1순위 청약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분류하여 청약접수함)

⊙ 3 순 위 : 종전대로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함

⊙ 85㎡초과 주택형의 경우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50%를 가점제를 적용 우선 공급하고, 50%를 추첨제를 통해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시 미달 시에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재당첨제한 등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시어 향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공급신청시 구비 사항(창구 청약자에 한함)

구분	구 비 사 항
본인(배우자포함) 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1, 2순위자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자 : 국민은행) ⊙ 청약예금통장, 청약부금통장(1, 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 2순위에 한함) 또는 배우자, 본인 서명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구비(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청약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 3자 대리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 · 비속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 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위임용) 1통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1통(신청접수처에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3순위 청약신청금

구분	금액	신청금 납부 방법
전주택형	100만원	창구 청약시 수도권 소재 금융기관 발행한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바랍니다.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2008.05.19) 이후 평일(시간 09:30~16:30)

⊙ 환불장소 : 청약접수 한 국민은행 본, 지점

⊙ 구비서류 : 주택공급신청 접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인감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 제3자 대리 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이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국민은행 본 · 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단, 지정계좌[청약자 본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한함]로 이체 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 이체됨) ⊙ 3순위 청약신청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구분	선 정 방 법
3자녀 무주택자 특별공급	·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신청자 입회하에 동 · 호수를 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
일반공급	· 국민은행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 · 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 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 · 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단, 1순위자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함)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공급 · 동일 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 신청자가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신청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신청자수가 미계약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 (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별도 공고함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체결일시 : 정당 당첨자 : 2008.05.21~2008.05.23(3일간, 시간 : 10:00~16:30)

⊙ 계약체결장소 : 동일하이빌 뉴시티 견본주택(전화 : 1577–1552)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 · 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국민은행 본 · 지점 무통장 입금(타행입금 불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972401–01–023326	(주)생보부동산신탁

■ 계약시 구비 사항

구분	구 비 사 항
공통	· 주택공급신청접수증 및 영수증 (단, 인터넷, 모바일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자의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 · 계약금(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 · 초본1통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또는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1통)
부적격통보를 받은자 (당첨자 중 해당자)	·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 ·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 · 비속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계약시 외국인의 구비사항은 공급신청시 구비사항과 동일함)

※ 2005. 7. 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계약조건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 1순위 당첨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에 가입한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자로 판명된 경우 – 1 · 2 · 3순위 당첨자 중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된 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재당첨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하며, 금융결제원에 5년 이내 재당첨여부 검색하고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는 금융결제원에 무주택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로 판명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함

⊙ 주민등록번호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동일 세대내에서 세대원이 각각 1순위로 신청하여 중복당첨된 경우에는 1건만 계약체결 가능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5항에 의거)

⊙ 입주개시전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지정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아파트 배치 · 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 조망권 · 소음 ·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행정구역 및 단지내 명칭 및 동 · 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입주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준함

■ 입주예정일 : 2011년 03월(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실입주 지정일에 납부해야함(단,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부대복리시설

⊙ 대주차장, 관리사무실, 어린이 놀이터, 문고, 경로당, 주민운동시설(수영장, GX룸, 실내골프연습장, 휘트니스센터) 등

■ 중도금 융자조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을 계약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융자 금액은 향후 정부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은 분양금액의 40% 범위내에서 대출 예정이며, 대출한도는 총부채상환비율(DTI)적용으로 인하여 개인에 따라 대출금액이 차이가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 바람. 이에 따른 대출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은 사업주체가 지지 않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대출 불가자는 납부 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미납시 연체료 가산됨)

■ 인터넷, ARS, KB 모바일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 본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인터넷	이용방법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부동산▶분양관▶사이버청약지점▶당첨확인▶주택별 조회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청약센터▶당첨자 조회
	이용기간	· 2008.05.16 ~ 2008.05.25 (10일)	
전화 (ARS)	이용방법	· 먼저 이용 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등을 연속하여 누름	
	전화번호	☎ 1588-9999 (서비스번호 : 701)	☎ 1369 (서비스코드 : 5#)
	이용기간	· 2008.05.16 ~ 2008.05.25 (10일)	
KB 모바일	이용방법	· SKT : Mbank 접속▶KB StarNet▶모바일주택청약▶PIN입력▶당첨확인	-
		· KTF, LGT : KB뱅킹▶모바일주택청약▶PIN입력▶당첨확인	
	이용기간	· 2008.05.16 ~ 2008.05.25 (10일)	-
휴대폰 문자 서비스	대상	·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
	제공일시	· 2008.05.16 (08:30) ※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당첨자 명단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의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 바람

■ 입주자 사전점검

⦿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도배, 도장 기타 경미한 공사에 대한 입주자사전점검방법은 건설교통부에서 정한「입주자사전점검운영요령」에 따름

■ 유의사항

⦿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건설교통부 지정 2002. 9. 6)에서 분양하는 주택으로 분양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함

⦿ 본 주택 103동 4호라인 최상층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규정(국방부 훈령 제606호)제20조에 따른 합의로 "작전보완시설"이 설치되고, "수도방위사령관"에게 무상영구임대 됨(설치 위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작전보완시설" 운용에 따라 입주자들의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으며, 향후 본 건에 대하여 청약자 및 계약자들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또한, "작전보완시설"이 작전상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무상영구임대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창구 청약자께서는 주택공급신청서상에 청약자가 기재한 내용과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또는 [형]란은 공급면적을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볼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공급면적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전일까지 변경한 지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 동일한 청약관련 저축 등으로 공급신청서를 발급받아 당첨일 이전에 타 주택을 공급받았을 경우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주택이 2개이상이 있을 경우 1개 주택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취소나 정정이 불가함(단, 접수 당일 접수시간 내에 한하여 취소 가능)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로 선정(3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타인명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이 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함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음)

⦿ 이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됨 ⦿ 하자 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견본주택에 시공(전시)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모양은 측량결과 부지증감 등 각종 조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공급회사에 문의하여 재확인 바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철거할 수 있음.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주택의 주차장 일부는 지하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설계 계획상 비주거 이용자들과 함께 사용 할 수 있음을 청약자 및 계약자 분들은 꼭 양지하시기 바라며, 향후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차장은 동선 및 기능의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음

⦿ 이 아파트에 사용된 이름은 '동일하이빌 뉴시티' 이며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 시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 · 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계약 체결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가 1%이내인 경우 별도정산하지 않기로 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단지내 시설물의 변경, 항 · 층에 따라 일조권, 환경권, 도로소음발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건축물의 외관 및 세대 측벽에 시공사 및 지하 대형마트 브랜드용 LED 광고 및 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내 주민운동시설 등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주민공용시설은 입주민 관리규약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필요에 따라 폐쇄공간이 발생될 수 있음(계약시 확인 요망)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모델하우스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청약 및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한주택보증(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입시사용승인)를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함

⦿ 빌트인 가전제품을 제외한 가전제품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에 문의 바람

■ 본 주택은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단위 : 원)	보증기간
제01282008-101-0004000호	285,243,91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포함)까지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보증의 범위 :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함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입주자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마이너스옵션 부위,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중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회사
상 호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동일하이빌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7-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70-9
대표이사	김 학 송	고 동 현
등록번호	110111-1617434	110111-0696124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감리회사	감리금액(VAT 별도)
건축감리	(주) 단 건축사사무소	3,893,112,174원
전기감리	(주) 신담 엔지니어링	1,119,604,199원
정보통신 및 소방감리	(주) 지여이앤씨	540,000,000원

■ 견본주택

⦿ 견본주택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9-19(☎ : 1577-1552)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